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0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김기용 · 백종현
구자근 · 김종양 · 최보운
고동진 · 박준태 · 최수진
주호영 · 강명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,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·총괄, 이용서비스 제공,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,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·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·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·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

제24조).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